

의안번호	제 777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최경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1년 6월 30일

# 충청북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최경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77
----------	-----

발의연월일 : 2021년 6월 30일

발의자 : 최경천, 박성원, 김국기,  
김영주, 이수완, 임동현,  
정상교 의원

## 1. 제안 이유

충청북도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의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고 노동자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적용대상(안 제3조)
- 다.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안 제4조)
- 라. 수급인의 책무(안 제5조)
- 마. 임금 등의 지급상황 확인(안 제6조)
- 바. 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안 제7조)
- 사. 임금 등의 직접지급(안 제8조)
- 아. 신고센터 설치 등(안 제9조)

자. 자료 제출(안 제10조)

차. 계약특수조건 반영(안 제11조)

카. 체불사업주 조치 등(안 제1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재무과

라. 입법예고: 2021. 6. 22. ~ 2021. 6. 27.

## 충청북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여 노동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란 충청북도교육청(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 각급학교 및 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을 말한다.
2. “발주자”란 관급공사를 수급인에게 도급하는 기관 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으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4.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지역건설노동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충청북도에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임금”이란 수급인이 노동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8. “건설기계대여업자”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건설기계임대료”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임대료를 말한다.
10. “임금 등”이란 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11. “체불임금 등”이란 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건설기계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12.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원 등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교육청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2.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3.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의 기타공사

4.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용역

5.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수급인은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5조(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관급공사를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

2. 건설기계임대차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작성한 임대차계약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제1항의 계약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노동자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명단, 연락처, 지급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⑥ 수급인은 노동자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내역을 계약담당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임금 등의 지급상황 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확인·점검하여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수급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발주자가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공사감독자는 대가 지급 전 까지 노동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노동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임금 등의 직접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였을 때 노동자가 수급인과의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의 한도 내에서 노동자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 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의 임금을 현금으로 한 차례 이상 지체한 경우
2. 수급인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등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료 지급 기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4. 노동자의 임금이나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건설기계임대료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노동자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자료 제출)** 발주자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관급공사 계약 체결 시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체불사업주 조치 등) ① 발주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임금 등을 체불한 경우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여 체불임금 등의 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 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를 포함한다)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 관계법령

## □ 근로기준법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62호, 2021. 1. 5.,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3. 생략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9. 생략

제43조의2(채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채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채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채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채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채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채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20호, 2020. 4.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1. 17.>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3. 생략

4.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 9. 생략

②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④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개정 2014. 1. 28.>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인 경우 해당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9.>

[전문개정 2009. 12. 29.]

[제목개정 2014. 1. 28.]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2021. 6. 17.]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18., 2015. 7. 24., 2018. 8. 14., 2019. 4. 30., 2020. 2. 18., 2021. 3. 16.>

1 ~ 4. 생략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7~11. 생략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1. 6. 17.]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조에서 “공공건설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4. 30.>

1.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 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4. 다음 각 목의 사업장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자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로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 다.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

호에 따라 고용제한 처분을 받거나,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6.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 같은 법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 같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 등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즉시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해당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하도급 참여가 제한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참여제한이 개시되기 7일 전까지 그 제한내용을 통보(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⑤ 수급인은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설사업자는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하도급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⑥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공사의 하수급인 중에 하도급 참여제한 중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정보가 제공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하도급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본조신설 2018. 12. 18.]

# 충청북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시행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